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용연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110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김용연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이호대, 김호평, 김상훈,
김정태, 김태호, 추승우,
송아량, 권수정, 김제리,
송도호, 김동식, 김소양,
이영실, 오현정 의원 (14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실시하고 있으며,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원룸형 주택 건설 혹은 매입 시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고 있음.
- 이때,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면수 산정이 시·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매입형 주택에만 한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은 완화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원룸형 임대주택의 정의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함.

(안 제2조제1호마목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주택법」, 「주택법 시행령」,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,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마목 중 “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시,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서울공공주택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라. (생략)</p> <p>마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중 <u>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</u>(이하 “원룸형 임대주택”이라 한다)</p> <p>바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----- ----- -- <u>시,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</u>----- ----- -----</p> <p>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